

일개 도지역 보건기관 근무 치과위생사의 직무실태와 개선방안

은종영, 감 신*, 임지선¹⁾, 양진훈¹⁾, 김종연¹⁾, 한창현, 유운선²⁾, 차병준²⁾, 송근배³⁾
경북대학교 보건대학원,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¹⁾
대경대학²⁾, 경북대학교 치과대학 예방치과학교실³⁾

Task Status of Dental Hygienists of Health Centers and Subcenters

Jong-Young Eun, Sin Kam*, Ji-Seun Lim¹⁾, Jin-Hoon Yang¹⁾, Jong-Yeon Kim¹⁾,
Chang-Hyun Han, Yoon-Sun Yoo²⁾, Byung-Jun Cha²⁾, Keun-Bae Song³⁾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School of Medicine,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¹⁾
Taekyeung College²⁾
Department of Preventive and Public Health Dentistry,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³⁾

= ABSTRACT =

This study was performed to investigate the task status and performance improvement plan of dental hygienists of Health Centers and Subcenters.

The Data collected by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survey of 203 dental hygienists of Health Centers and Subcenters located in Gyeongsangbuk-do were analyzed.

The major results are as follows:

For the degree of satisfaction in tasks, 73.9% of dental hygienists of Health Centers and Subcenters felt proud, 52.2% felt overwork, 32.0% hoped transferring to other worksite and the major reason of transferring was lack of promotion opportunity in officials of dental hygiene department. Dental hygienists received job education in addition continuous job education in last 3 years were 47.3%. 19.2% of dental hygienists performed the special dental health program for residents in last 3years.

Almost half(53.7%) of dental hygienists replied that dental hygienists who were not engaged in dental health tasks should be engaged in dental health tasks.

The major dental hygienic tasks performed by dental hygienic officials were support for dental treatment(41.6%).

* 교신저자: 대구광역시 중구 동인동 2가 101번지, 전화: 053-420-6967, 팩스: 053-425-2447, E-mail: kamshin@knu.ac.kr

Dental hygienic officials answered that dental health tasks, school dental health program, vertical dental health program should be conducted as important tasks in order. And they replied that the most serious problem of dental hygienic tasks was 'not conducting dental health affairs due to lack of dental doctor'(40.9%), 'lack of concern for dental health tasks'(26.4%), and 'lack of budget and personnels for dental tasks'(19.0%), and the most important thing to improve dental hygienic tasks was 'posting dental hygienists in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MOHW) and province', 'securing of budget and personnels for dental health tasks'.

KEY WORDS: Task status, Dental hygienists, Health centers and subcenters

서 론

오늘날 생활수준의 향상과 식생활 습관의 변화로 12세 아동의 우식경험영구치지수는 2000년도 3.3개로서 1990년도 3.0개에 비해 10%정도 증가하였다. 1997년 의료보험통계에 의하면 구강질환 치료를 위해 지급된 외래진료비가 5,229억원으로 의료보험으로 지급된 외래총진료비의 9.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3년전의 2,980억원에 비해 1.8배나 증가된 것이다. 또한 1997년도 외래질환별 다발생 진료순위 5위안에 구강질환이 2개(치아우식증, 치주 및 치근단 주위조직질환)나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구강질환치료에 투입되는 국민의료비의 급증에도 불구하고 구강질환 발생률은 계속 증가되는 추세로서 구강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구강보건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이 요구되고 있다(송근배 등, 1999).

21세기 보건복지부의 구강보건정책의 목표는 "지역사회 구강보건사업 활성화를 통하여 치아우식증, 치주조직병을 예방하고 구강보건 진료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활용함으로써 계층별 불균형을 해소하며 국민구강 진료비 지출을 최소화한다"(보건복지부, 2002)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구강보건 예방사업이 국민의료비 지출을 막는 가장 효과적인 사업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1995년 국민건강증진법에 구강건강관리 업무를

포함시켰고, 1997년에는 보건복지부에 구강보건과가 신설되었으며, 2000년 1월에는 구강보건법이 제정되어 구강보건사업에 대한 중요성과 치과의사 및 치과위생사에 대한 역할이 크게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나라는 1956년 12월 13일 보건소법이 제정·공포되면서 시·도립 보건소가 설치되기 시작하였으며, 1978년 제정된 '국민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1979년 공중보건치과의제도가 시행되어 보건소와 보건지소에 공중보건(치과)의사가 배치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공공보건기관에 치과위생사의 필요성이 부각되어 1986년부터 정규적이 아닌 임시적으로 배치되어 치과진료보조업무를 수행하기 시작하였고, 1992년 3월부터는 정규적인 의료기술직 또는 보건직으로 임용되게 되었다.

2001년 9월말 현재 경상북도에는 25개 보건소와 216개의 보건지소가 설치되어 있고, 여기에 공중보건치과의사 122명과 치과위생사 204명이 근무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치과대학의 여성졸업자의 증가 등으로 공중보건치과의사수가 점차 감소하여 지역보건법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에 의한 "전문인력 등의 면허 또는 자격의 종별에 따른 최소배치기준" 상의 치과의사 정원의 50% 정도 수준이고, 공중보건치과의사의 감소로 경상북도 보건기관 근무 치과위생사의 22%인 45명은 구강보건업무가 아닌 타 업무에 종사하는 등의 불합리

한 점을 안고 있으며, 치과 유희장비 관리에 따른 경제적 손실도 무시할 수 없는 실정이다(경상북도, 2001).

따라서 앞으로는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지역특성에 적합한 포괄적인 구강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치과위생사는 전문직종으로서 직무는 단순한 치과진료보조 업무가 아닌 구강보건시설 운영, 학교구강보건사업 등 종전보다는 보다 향상된 구강보건사업을 전개하는 등 지역사회주민의 구강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중추적 역할을 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최근 보건기관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들의 업무상태에 대한 연구가 몇 편(김진범과 황윤숙, 1990; 강성귀 등, 1995; 성정희, 1997; 최충호와 권호근, 1997; 장선희, 1998) 있어 왔으나 이들은 주로 구강보건업무를 중심으로 수행 상태를 조사하였고, 치과위생사의 타 업무종사 정도와 타 업무종사 치과위생사의 향후 활용방안 등 전반적인 치과위생사의 직무상태와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경상북도 내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직무상태를 분석하고 향후 개선방안을 알아봄으로써 지역사회 구강건강증진을 위한 치과위생사 직무 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본 연구가 시도되었다.

대상 및 방법

경상북도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근무하고 있는 치과위생사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204명 전원을 대상으로 치과위생사의 직무상태, 직무만족도, 그리고 향후 직무개선 방안을 알아보기 위하여 2002년 4월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각 보건(지)소의 구강보건업무 담당자에게 사전에 전화로 조사의 취지를 설명한 후, 설문지를 보내어 피조사자가 무기명으로 직접 설문에 응답하여 우편 또는 인편으로 회수하였는데, 교육 중인 1명을 제외한 203명이 응답하였다.

설문지는 기존의 참고문헌과 전문가의 의견을 토대로 개발한 후 사전조사를 통하여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설문지 내용은 치과위생사의 근무지 특성, 치과위생사의 일반적 특성, 직무상태, 직무만족도, 직무개선방안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 10.01 for Windows를 이용하여 치과위생사의 일반적 특성과 근무처(보건소/보건지소)에 따른 직무상태, 직무만족도, 직무개선 방안을 백분율로 비교 분석하였고, 통계적 검증은 카이-제곱 검정과 t-test를 실시하였다.

결 과

연구대상 보건기관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의 근무처에 따른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보건소(보건의료원)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가 88명으로 43.3%, 보건지소 근무자가 115명으로 56.7%였다. 연령은 35-39세 사이가 66.5%로 가장 높았고, 결혼상태는 유배우자가 93.1%, 학력은 전문대졸이 87.2%였다. 직급은 7급이 92.6%로 대부분이었고, 보건기관 근무경력은 11-15년이 79.3%로 가장 높았다. 현재 구강보건업무에만 종사하는 치과위생사가 54.7%였고, 구강업무와 타업무를 병행하고 있는 경우가 23.6%였으며, 구강업무 외의 타업무만 담당하고 있는 치과위생사가 21.7%였는데, 보건소 근무 치과위생사에서 타업무만 종사하는 비율이 보건지소 근무자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p < 0.01$). 공무원으로 근무한 동기는 '공무원은 신분보장이 되므로'가 54.7%로 가장 높았다.

치과위생사들은 타부서와 비교한 업무량에 대해 52.2%가 타부서에 비해 많다고 하였고, 3.9%만이 적다고 응답하였는데, 보건소 근무자가 보건지소 근무자보다 다부서에 비해 업무량이 더 많다고 하여 근무처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p < 0.01$). 보수에 대해서는 36.5%가 만족하는 편이라고 하였고, 61.6%가 보통이라고 하였다(표 2).

4 일개 도지역 보건기관 근무 치과위생사의 직무실태와 개선방안

표 1. 대상 보건기관 근무 치과위생사의 근무처에 따른 일반적 특성

	보건소(보건의료원)	보건지소	계
단위: 명(%)			
연령(세)			
≤34	13(14.8)	25(21.7)	38(18.7)
35-39	58(65.9)	77(67.0)	135(66.5)
40≤	17(19.3)	13(11.3)	30(14.8)
결혼상태			
기혼	84(95.5)	105(91.3)	189(93.1)
미혼/기타	4(4.5)	10(8.7)	14(6.9)
학력			
전문대졸	78(88.6)	99(86.1)	177(87.2)
대졸 이상	10(11.4)	16(13.9)	26(12.8)
직급			
7급	82(93.2)	106(92.2)	188(92.6)
8급 이하	6(6.8)	9(7.8)	15(7.4)
보건기관 근무경력(년)*			
≤10	6(6.8)	11(9.6)	17(8.4)
11-15	65(73.9)	96(83.5)	161(79.3)
15<	17(19.3)	8(7.0)	25(12.3)
현재 구강보건 종사여부**			
구강업무 종사	45(51.1)	66(57.4)	111(54.7)
구강업무+타업무 종사	9(10.2)	39(33.9)	48(23.6)
타업무 종사	34(38.6)	10(8.7)	44(21.7)
공무원 근무동기			
평소 뜻한바 있어서	21(23.9)	31(27.0)	52(25.6)
민간기관은 적성에 맞지 않음	9(10.2)	17(14.8)	26(12.8)
공무원은 신분보장이 되므로	51(58.0)	60(52.2)	111(54.7)
기 타	7(8.0)	7(6.1)	14(6.9)
계	88(100.0) [43.3]	115(100.0) [56.7]	203(100.0)

* p<0.05, ** p<0.01.

업무에 대한 긍지와 보람을 많이 느낀다는 대상자는 73.9%인 반면, 긍지와 보람을 적게 느낀다는 응답은 0.5%에 불과하였다. 전직할 의사는 32.0%가 많다고 하였고, 29.6%가 보통이라고 하였으며, 38.4%가 적다고 하였는데, 구강업무 외의 업무에 종사할수록 전직의사가 많다는 응답이 높아졌다(p<0.01)(표 3).

전직의사가 있는 치과위생사의 전직이유로는 보건소 근무 치과위생사의 경우 승진기회 부족이 34.4%로 가

장 높았고, 그 다음이 기타(주로 타업무 종사때문) 31.3%, 업무량 과중 25.0% 순이었고, 보건지소 근무 치과위생사의 경우는 승진기회 부족이 48.5%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적성에 맞지 않아서로 근무처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p<0.05)(표 4).

대상 치과위생사가 직무교육에 참여한 적이 있는 경우가 47.3%였는데, 보건소 근무자가 보건지소 근무자보다, 대졸 이상자가 전문대졸업자보다 참여율이 유의

표 2. 보건기관근무 치과위생사의 타부서와 비교한 업무량과 보수에 대한 만족도

단위: 명(%)

	타부서에 비해 업무량			보 수		
	많 음	비 슷	적 음	많 음	비 슷	적 음
근무처						
보건소	55(62.5)	30(34.1)	3(3.4)**	33(37.5)	54(61.4)	1(1.1)
보건지소	51(44.3)	59(51.3)	5(4.3)	41(35.7)	71(61.7)	3(2.6)
연령(세)						
-34	19(50.0)	17(44.7)	2(5.3)	10(26.3)	27(71.1)	1(2.6)
35-39	71(52.6)	58(43.0)	6(4.4)	55(40.7)	79(58.5)	1(0.7)
40-	16(53.3)	14(46.7)	-	9(30.0)	19(63.3)	2(6.7)
결혼상태						
기혼	99(52.4)	82(43.4)	8(4.2)	70(37.0)	116(61.4)	3(1.6)
미혼/기타	7(50.0)	7(50.0)	-	4(28.6)	9(64.3)	1(7.1)
학력						
전문대졸	92(52.0)	78(44.1)	7(4.0)	66(37.3)	107(60.5)	4(2.3)
대졸 이상	14(53.9)	11(42.3)	1(3.8)	8(30.8)	18(69.2)	-
직급						
7급	97(51.6)	84(44.7)	7(3.7)	70(37.2)	115(61.2)	3(1.6)
8급 이하	9(60.0)	5(33.3)	1(6.7)	4(26.7)	10(66.7)	1(6.7)
보건기관 근무경력(년)						
≤10	8(47.1)	8(47.1)	1(5.9)	3(17.6)	13(76.5)	1(5.9)
11-15	83(51.6)	72(44.7)	6(3.7)	62(38.5)	97(60.2)	2(1.2)
15<	15(60.0)	9(36.0)	1(4.0)	9(36.0)	15(60.0)	1(4.0)
현재 구강보건 종사여부						
구강업무 종사	59(53.2)	49(44.1)	3(2.7)	38(34.2)	71(64.0)	2(1.8)
구강업무+타업무 종사	24(50.0)	21(43.8)	3(6.3)	18(37.5)	28(58.3)	2(4.2)
타업무 종사	23(52.3)	19(43.2)	2(4.5)	18(40.9)	26(59.1)	-
공무원 근무동기						
평소 뜻한바 있어서	27(51.9)	23(44.2)	2(3.8)	15(28.8)	35(67.3)	2(3.8)
민간기관은 적성에 맞지 않음	11(42.3)	14(53.8)	1(3.8)	12(46.2)	13(50.0)	1(3.8)
공무원은 신분보장이 되므로	61(55.0)	47(42.3)	3(2.7)	43(38.7)	67(60.4)	1(0.9)
기 타	7(50.0)	5(35.7)	2(14.3)	4(28.6)	10(71.4)	-
계	106(52.2)	89(43.8)	8(3.9)	74(36.5)	125(61.6)	4(2.0)

** p<0.01.

하게 높았다(p<0.05). 그리고 특수사업에 참여한 적이 있는 경우는 19.2%였는데, 대졸 이상자가 전문대졸업자보다 유의하게 높았다(p<0.01)(표 5).

대상 치과위생사들은 공무원 계급에 6급 치과위생사가 없는 이유에 대해 타직렬의 견제때문이라는 응답이 60.6%로 가장 높았고, 인사부서의 관심부족(22.7%),

치과위생사의 힘이 부족하여(14.3%)의 순이었다(표 6).

보건기관근무 치과위생사가 치과위생업무 이외의 타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데 대한 의견으로는 반드시 구강 업무에 종사하게 해야한다는 의견이 53.7%로 가장 높았고, 타업무에 종사하는 것도 업무에 대한 시각을 넓힐 수 있으므로 괜찮다는 의견이 30.5%, 본인의사에 맡

6 일개 도지역 보건기관 근무 치과위생사의 직무실태와 개선방안

표 3. 보건기관근무 치과위생사의 특성에 따른 업무에 대한 긍지·보람과 전직의사

	업무에 대한 긍지·보람			전 직 의 사		
	많음	보통	적음	많음	보통	적음
근무처						
보건소	68(77.3)	20(22.7)	-	32(36.4)	26(29.5)	30(34.1)
보건지소	82(71.3)	32(27.8)	1(0.9)	33(28.7)	34(29.6)	48(41.7)
연령(세)						
-34	27(71.1)	11(28.9)	-	13(34.2)	8(21.1)	17(44.7)
35-39	99(73.3)	35(25.9)	1(0.7)	45(33.3)	40(29.6)	50(37.0)
40-	24(80.0)	6(20.0)	-	7(23.3)	12(40.0)	11(36.7)
결혼상태						
기혼	139(73.5)	49(25.9)	1(0.5)	62(32.8)	56(29.6)	71(37.6)
미혼/기타	11(78.6)	3(21.4)	-	3(21.4)	4(28.6)	7(50.0)
학력						
전문대졸	130(73.4)	47(26.6)	-	56(31.6)	51(28.8)	70(39.5)
대졸 이상	20(76.9)	5(19.2)	1(3.9)	9(34.6)	9(34.6)	8(30.8)
직급						
7급	138(73.4)	49(26.1)	1(0.5)	57(30.3)	57(30.3)	74(39.4)
8급 이하	12(80.0)	3(20.0)	-	8(53.3)	3(20.0)	4(26.7)
보건기관 근무경력(년)						
≤10	10(58.8)	7(41.2)	-	9(52.9)	4(23.5)	4(23.5)
11-15	118(73.3)	42(26.1)	1(0.6)	46(28.6)	50(31.1)	65(40.4)
15<	22(88.0)	3(12.0)	-	10(40.0)	6(24.0)	9(36.0)
현재 구강보건 종사여부						
구강업무 종사	81(73.0)	30(27.0)	-	24(21.6)	34(30.6)	53(47.7)**
구강업무+타업무 종사	35(72.9)	12(25.0)	1(2.1)	18(37.5)	13(27.1)	17(35.4)
타업무 종사	34(77.3)	10(22.7)	-	23(52.3)	13(29.5)	8(18.2)
공무원 근무동기						
평소 뜻한바 있어서	43(82.7)	8(15.4)	1(1.9)	14(26.9)	18(34.6)	20(38.5)
민간기관은 적성에 맞지 않음	16(61.5)	10(38.5)	-	7(26.9)	10(38.5)	9(34.6)
공무원은 신분보장이 되므로	81(73.0)	30(27.0)	-	39(35.1)	25(22.5)	47(42.3)
기 타	10(71.4)	4(28.6)	-	5(35.7)	7(50.0)	2(14.3)
계	150(73.9)	52(25.6)	1(0.5)	65(32.0)	60(29.6)	78(38.4)

* p<0.05, ** p<0.01.

겨야 한다'가 13.8%였는데, 기혼인 경우 미혼/기타에 비해 구강업무에 종사하게 해야 한다는 응답률이 높았고(p<0.05), 공무원 근무동기가 '평소 뜻한 바 있어서'와 '공무원은 신분보장이 되므로'인 경우가 구강업무에

종사하게 해야 한다는 응답률이 높았다(p<0.01)(표 7). 치과의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는 지역의 치과위생사 활용방안으로는 치과진료실을 구강보건실로 전환하여 구강질환 예방사업에 종사하도록 해야 한다'가 61.9%로

표 4. 타부서로의 전직의사가 있는 치과위생사의 이유

	단위: %		
	보건소 (N=32)	보건지소 (N=33)	계 (N=65)
승진기회 부족	34.4	48.5	41.5
업무량이 과중	25.0	9.1	16.9
적성에 맞지 않음	9.4	27.3	18.5
상사와 동료간의 불화	-	3.0	1.5
기 타	31.3	12.1	21.5
계	100.0	100.0	100.0

p<0.05 by Chi-square test.

가장 높았고, 지역실정에 맞는 구강보건사업을 개발하여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34.2%였다(표 8).

보건기관의 유휴 치과장비의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지역실정에 맞게 치면세마사이에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89.1%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는데, 직급이 7급인 경우 8급 이하에 비해 지역실정에 맞게 치면세마사이에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p<0.05)(표 9).

표 5. 보건기관근무 치과위생사의 특성에 따른 직무교육과 특수사업 참여 여부

	단위: 명(%)			
	직무교육 참여 여부		특수사업 참여 여부	
	있 음	없 음	있 음	없 음
근무처				
보건소	49(55.7)	39(44.3)*	23(26.1)	65(73.9)
보건지소	47(40.9)	68(59.1)	16(13.9)	99(86.1)
연령(세)				
-34	14(36.8)	24(63.2)	7(18.4)	31(81.6)
35-39	69(51.1)	66(48.9)	22(16.3)	113(83.7)
40-	13(43.3)	17(56.7)	10(33.3)	20(66.7)
결혼상태				
기혼	90(47.6)	99(52.4)	37(19.6)	152(80.4)
미혼/기타	6(42.9)	8(57.1)	2(14.3)	12(85.7)
학력				
전문대졸	78(44.1)	99(55.9)*	29(16.4)	148(83.6)**
대졸 이상	18(69.2)	8(30.8)	10(38.5)	16(61.5)
직급				
7급	91(48.4)	97(51.6)	34(18.1)	154(81.9)
8급 이하	5(33.3)	10(66.7)	5(33.3)	10(66.7)
보건기관 근무경력(년)				
≤10	5(29.4)	12(70.6)	4(23.5)	13(76.5)
11-15	79(49.1)	82(50.9)	26(16.1)	135(83.9)
15<	12(48.0)	13(52.0)	9(36.0)	16(64.0)
현재 구강보건 종사여부				
구강업무 종사	50(45.0)	61(55.0)	19(17.1)	92(82.9)
구강업무+타업무 종사	23(47.9)	25(52.1)	12(25.0)	36(75.0)
타업무 종사	23(52.3)	21(47.7)	8(18.2)	36(81.8)
공무원 근무동기				
평소 뜻한바 있어서	21(40.4)	31(59.6)	12(23.1)	40(76.9)
민간기관은 적성에 맞지 않음	15(57.7)	11(42.3)	5(19.2)	21(80.8)
공무원은 신분보장이 되므로	56(50.5)	55(49.5)	21(18.9)	90(81.1)
기 타	4(28.6)	10(71.4)	1(7.1)	13(92.9)
계	96(47.3)	107(52.7)	39(19.2)	164(80.8)

* p<0.05.

8 일개 도지역 보건기관 근무 치과위생사의 직무실태와 개선방안

표 6. 보건기관근무 치과위생사 중 공무원계급 6급이 없는 이유에 대한 의견

	타직렬 전체	인사부서 관심부족	치과위생사 힘의 부족	기 타
단위: 명(%)				
근무처				
보건소	61(69.3)	17(19.3)	8(9.1)	2(2.3)
보건지소	62(53.9)	29(25.2)	21(18.3)	3(2.6)
연령(세)				
-34	21(55.3)	13(34.2)	3(7.9)	1(2.6)
35-39	77(57.0)	31(23.0)	23(17.0)	4(3.0)
40-	25(83.3)	2(6.7)	3(10.0)	-
결혼상태				
기혼	112(59.3)	44(23.3)	28(14.8)	5(2.6)
미혼/기타	11(78.6)	2(14.3)	1(7.1)	-
학력				
전문대졸	109(61.6)	37(20.9)	27(15.3)	4(2.3)
대졸 이상	14(53.8)	9(34.6)	2(7.7)	1(3.9)
식급				
7급	110(58.5)	44(23.4)	29(15.4)	5(2.7)
8급 이하	13(86.7)	2(13.3)	-	-
보건기관 근무경력(년)				
≤10	13(76.5)	3(17.6)	1(5.9)	-
11-15	97(60.2)	38(23.6)	22(13.7)	4(2.5)
15<	13(52.0)	5(20.0)	6(24.0)	1(4.0)
현재 구강보건 종사여부				
구강업무 종사	65(58.6)	26(23.4)	16(14.4)	4(3.6)
구강업무+타업무 종사	29(60.4)	13(27.1)	6(12.5)	-
타업무 종사	29(65.9)	7(15.9)	7(15.9)	1(2.3)
공무원 근무동기				
평소 뜻한바 있어서	30(57.7)	13(25.0)	8(15.4)	1(1.9)
민간기관은 적성에 맞지 않음	14(53.8)	3(11.5)	7(26.9)	2(7.7)
공무원은 신분보장이 되므로	68(61.3)	28(25.2)	13(11.7)	2(2.8)
기 타	11(78.6)	2(14.3)	1(7.1)	-
계	123(60.6)	46(22.7)	29(14.3)	5(2.5)

보건기관근무 치과위생사가 생각하는 보건기관의 타 업무에 비한 구강보건업무의 중요도와 구강보건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은 표 10과 같다. 타 보건업무에 비한 구강보건업무의 중요도에 대하여는 43.6%가 매우 중요하다, 36.1%가 중요하다고 하였고, 구강보건사업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75.9%가 매우 필요하다, 22.7%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보건기관근무 치과위생사가 생각하는 현실적으로 평가되는 구강보건업무의 중요도와 구강보건업무의 정책적 확대 가능성에 대한 의견은 표 11과 같다. 56.2%가 현실적으로 구강보건업무가 중요하게 평가받고 있다고 하였고, 34.5%가 보통이라고 하였다. 구강보건업무의

표 7. 보건기관 내에서 타 업무 종사 치과위생사에 대한 의견

	단위: 명(%)			
	구강업무에 종사케함	타업무에 종사케함	본인의사 에 맡김	기타
근무처				
보건소	44(50.0)	31(35.2)	11(12.5)	2(2.3)
보건지소	65(56.5)	31(27.0)	17(14.8)	2(1.7)
연령(세)				
-34	20(52.6)	9(23.7)	8(21.1)	1(2.6)
35-39	72(53.3)	43(31.9)	18(13.3)	2(1.5)
40-	17(56.7)	10(33.3)	2(6.7)	1(3.3)
결혼상태				
기혼	104(55.0)	59(31.2)	22(11.6)	4(2.1)*
미혼/기타	5(35.7)	3(21.4)	6(42.9)	-
학력				
전문대졸	96(54.2)	53(29.9)	25(14.1)	3(1.7)
대졸 이상	13(50.0)	9(34.6)	3(11.5)	1(3.9)
직급				
7급	101(53.7)	58(30.9)	26(13.8)	3(1.6)
8급 이하	8(53.3)	4(26.7)	2(13.3)	1(6.7)
보건기관 근무경력(년)				
≤10	10(58.8)	3(17.6)	3(17.6)	1(5.9)
11-15	88(54.7)	53(32.9)	17(10.6)	3(1.9)
15<	11(44.0)	6(24.0)	8(32.0)	-
현재 구강보건 종사여부				
구강업무 종사	60(54.1)	31(27.9)	16(14.4)	4(3.6)
구강업무+타업무 종사	30(62.4)	12(25.0)	6(12.5)	-
타업무 종사	19(43.2)	19(43.2)	6(13.6)	-
공무원 근무동기				
평소 뜻한바 있어서	28(53.8)	15(28.8)	8(15.4)	1(1.9)**
민간기관은 적성에 맞지 않음	10(38.5)	9(34.6)	7(26.9)	-
공무원은 신분보장이 되므로	66(59.5)	31(27.9)	13(11.7)	1(0.9)
기 타	5(35.7)	7(50.0)	-	2(14.3)
계	109(53.7)	62(30.5)	28(13.8)	4(2.0)

* p<0.05, ** p<0.01.

확대 가능성에 대하여는 36.6%가 매우 확대될 것이다, 55.9%가 확대될 것이라고 하였다.

보건소 근무 치과위생사의 일평균 업무시간 중 치과 위생업무 담당시간이 차지하는 비율은 51.2%였고, 보건지소 근무 치과위생사의 고유업무 담당시간 비율은

63.1%로 보건지소 근무 치과위생사의 고유업무 담당 시간 비율이 높았다(표 12).

보건소 근무 치과위생사의 구강보건업무별 투입시간 비율은 치과진료실 내에서의 치과진료 보조 업무가 26.9%로 가장 높았고, 기타(타업무 종사) 22.1%, 행정

10 일개 도지역 보건기관 근무 치과위생사의 직무실태와 개선방안

표 8. 치과의사 미배치 지역 치과위생사의 활용방안에 대한 의견

	단위: 명(%)		
	구강보건 예방사업 종사	구강보건 사업개발 활용	기 타
근무처			
보건소	47(53.4)	37(42.0)	4(4.5)
보건지소	78(63.4)	32(28.1)	4(3.5)
연령(세)			
-34	25(65.8)	13(34.2)	-
35-39	84(62.2)	44(32.6)	7(5.2)
40-	16(55.2)	12(41.4)	1(3.4)
결혼상태			
기혼	117(62.2)	63(33.5)	8(4.3)
미혼/기타	8(57.1)	6(42.9)	-
학력			
전문대졸	109(61.9)	61(34.7)	6(3.4)
대졸 이상	16(61.5)	8(30.8)	2(7.7)
직급			
7급	117(62.6)	63(33.7)	7(3.7)
8급 이하	8(53.3)	6(40.0)	1(6.7)
보건기관 근무경력(년)			
≤10	8(47.1)	9(52.9)	-
11-15	103(64.4)	51(31.9)	6(3.8)
15<	14(56.0)	9(36.0)	2(8.0)
현재 구강보건 종사여부			
구강업무 종사	67(60.9)	40(36.4)	3(2.7)
구강업무+타업무 종사	29(60.4)	18(37.5)	1(2.1)
타업무 종사	29(65.9)	11(25.0)	4(9.1)
공무원 근무동기			
평소 뜻한바 있어서	27(51.9)	24(46.2)	1(1.9)
민간기관은 적성에 맞지 않음	17(65.4)	8(30.8)	1(3.8)
공무원은 신분보장이 되므로	72(65.5)	33(30.0)	5(4.5)
기 타	9(64.3)	4(28.6)	1(7.1)
계	125(61.9)	69(34.2)	8(4.0)

또는 민원업무 보조(20.5%)의 순이었다. 보건지소 근무 치과위생사는 치과실 내에서의 치과진료 업무가 52.8%로 가장 높았고, 기타(타업무 종사) 13.7%, 행정 또는 민원업무 및 보조(11.1%)의 순이었다. 치과실내에서의 치과진료 업무에 투입하는 시간비율은 보건소에 비해 보건지소가 높았고($p < 0.01$), 구강실내에서의 구강보건

업무와 행정 또는 민원업무 및 보조는 보건소가 유의하게 높았다($p < 0.05$)(표 13).

보건기관 근무 치과위생사들은 구강보건업무 중에서 구강보건실 내에서의 구강보건업무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였고(57.6%), 학교구강보건사업(36.0%), 수직적 구강보건사업(4.4%)의 순이었다(표 14).

표 9. 보건기관의 유휴 치과장비의 활용방안에 대한 의견

	매 각 처 분	치면세마 사업활용	기 타
근무처			
보건소	3(3.4)	81(92.0)	4(4.5)
보건지소	8(7.0)	99(86.8)	7(6.1)
연령(세)			
-34	3(7.9)	32(84.2)	3(7.9)
35-39	7(5.2)	121(89.6)	7(5.2)
40-	1(3.4)	27(93.1)	1(3.4)
결혼상태			
기혼	9(4.8)	169(89.9)	10(5.3)
미혼/기타	2(14.3)	11(78.6)	1(7.1)
학력			
전문대졸	9(5.1)	157(89.2)	10(5.7)
대졸 이상	2(7.7)	23(88.5)	1(3.8)
직급			
7급	11(5.9)	168(89.8)	8(4.3)*
8급 이하	-	12(80.0)	3(20.0)
보건기관 근무경력(년)			
≤10	1(5.9)	14(82.4)	2(11.8)
11-15	8(5.0)	145(90.6)	7(4.4)
15<	2(8.0)	21(84.0)	2(8.0)
현재 구강보건 종사여부			
구강업무 종사	8(7.3)	94(85.5)	8(7.3)
구강업무+타업무 종사	2(4.2)	45(93.8)	1(2.1)
타업무 종사	1(2.3)	41(93.2)	2(4.5)
공무원 근무동기			
평소 뜻한바 있어서	4(7.7)	43(82.7)	5(9.6)
민간기관은 적성에 맞지 않음	2(7.7)	23(88.5)	1(3.8)
공무원은 신분보장이 되므로	3(2.7)	103(93.6)	4(3.6)
기 타	2(14.3)	11(78.6)	1(7.1)
계	11(5.4)	180(89.1)	11(5.4)

* p<0.05.

치과위생사들이 구강보건사업을 수행하는데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공중보건치과의사 부족으로 치과위생사 고유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있다'(32.0%)가 가장 높았고, '보건기관 구성원의 구강보건사업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여 사업시원이 안 된다'(31.0%), '예산 및 인력부족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구강보건사업 실시가 어렵다'

(13.8%), '치과위생사 업무영역 및 구강보건사업 범위가 좁아서 자율적인 사업추진이 어렵다'(12.3%)의 순이었다(표 15).

보건기관 근무 치과위생사의 구강보건업무 개선방안으로는 보건복지부 및 도에 치과위생사 배치(30.5%)가 가장 높았고, 인력 및 예산확보(24.1%), 구강보건법 강

표 10. 타 업무에 비한 구강보건업무의 중요도와 구강보건사업의 필요성

	구강보건업무의 중요도			구강보건사업의 필요성		
	매우중요	중요	비슷이하	매우필요	필요	보통 이하
근무처						
보건소	42(47.7)	31(35.2)	15(17.0)	70(79.5)	18(20.5)	-
보건지소	46(40.4)	42(36.9)	26(22.8)	84(73.0)	28(24.3)	3(2.6)
연령(세)						
-34	15(39.5)	12(31.6)	11(28.9)	30(78.9)	8(21.1)	-
35-39	58(43.0)	51(37.8)	26(19.3)	101(74.8)	33(24.4)	1(0.7)
40-	15(51.7)	10(34.5)	4(13.8)	23(76.7)	5(16.7)	2(6.7)
결혼상태						
기혼	81(42.9)	69(36.5)	39(20.6)	144(76.2)	43(22.8)	2(1.1)
미혼/기타	7(53.8)	4(30.8)	2(15.4)	10(71.4)	3(21.4)	1(7.1)
학력						
전문대졸	78(44.3)	62(35.2)	36(20.5)	133(75.1)	42(23.7)	2(1.1)
대졸 이상	10(38.5)	11(42.3)	5(19.2)	21(80.8)	4(15.4)	1(3.8)
직급						
7급	83(44.4)	67(35.8)	37(19.8)	142(75.5)	43(22.9)	3(1.6)
8급 이하	5(33.3)	6(40.0)	4(26.7)	12(80.0)	3(20.0)	-
보건기관 근무경력(년)						
≤10	4(23.5)	9(52.9)	4(23.5)	14(82.4)	3(17.6)	-
11-15	71(44.4)	55(34.4)	34(21.3)	121(75.2)	37(23.0)	3(1.9)
15<	13(52.0)	9(36.0)	3(12.0)	19(76.0)	6(24.0)	-
현재 구강보건 종사여부						
구강업무 종사	44(40.0)	41(37.3)	25(22.7)	80(72.1)	28(25.2)	3(2.7)
구강업무+타업무 종사	21(43.8)	17(35.4)	10(20.8)	39(81.3)	9(18.8)	-
타업무 종사	23(52.3)	15(34.1)	6(13.6)	35(79.5)	9(20.5)	-
공무원 근무동기						
평소 뜻한바 있어서	22(43.1)	21(41.2)	8(15.7)	44(84.6)	7(13.5)	1(1.9)
민간기관은 적성에 맞지 않음	8(30.8)	11(42.3)	7(26.9)	16(61.5)	10(38.5)	-
공무원은 신분보장이 되므로	52(46.8)	36(32.4)	23(20.7)	82(73.9)	27(24.3)	2(1.8)
기타	6(42.9)	5(35.7)	3(21.4)	12(85.7)	2(14.3)	-
계	88(43.6)	73(36.1)	41(20.3)	154(75.9)	46(22.7)	3(1.5)

화(23.6%), 보건기관 근무 치과위생사 업무영역 확대 (21.2%)의 순이었다(표 16).

고 찰

경상북도내 보건기관 근무 치과위생사의 연령은

66.5%가 35-39세이었고 14.8%가 40세 이상이었으며, 93.1%가 기혼자였다. 보건기관 근무경력은 91.6%가 11년 이상이었다. 송윤신(1995)의 연구에서는 23세 이하가 34.3%로 가장 많았고, 기혼자는 26.7%였으며, 근무연한은 5년 이하가 63.4%로 많았는데, 전주연(1992), 정순희(1993)의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였다. 이는 본

표 11. 현실적인 구강보건업무 중요도 평가와 구강보건업무의 정책적 확대 가능성 여부

단위: 명(%)

	구강보건업무 중요도 평가			구강보건업무 확대 여부		
	중 요	보 통	중요하지않음	매우확대	확 대	비슷이하
근무처						
보건소	56(63.6)	28(31.8)	4(4.5)	32(36.4)	50(56.8)	6(6.8)
보건지소	58(50.4)	42(36.5)	15(13.0)	42(36.8)	63(55.3)	9(7.9)
연령(세)						
-34	17(44.7)	14(36.8)	7(18.4)	14(36.8)	21(55.3)	3(7.9)
35-39	81(60.0)	43(31.9)	11(8.1)	51(38.1)	76(56.7)	7(5.2)
40-	16(53.3)	13(43.3)	1(3.3)	9(30.0)	16(53.3)	5(16.7)
결혼상태						
기혼	106(56.1)	67(35.4)	16(8.5)	71(37.8)	104(55.3)	13(6.9)
미혼/기타	8(57.1)	3(21.4)	3(21.4)	3(21.4)	9(64.3)	2(14.3)
학력						
전문대졸	102(57.6)	60(33.9)	15(8.5)	64(36.4)	101(57.4)	11(6.3)
대졸 이상	12(46.2)	10(38.4)	4(15.4)	10(38.4)	12(46.2)	4(15.4)
직급						
7급	109(58.0)	62(33.0)	17(9.0)	67(35.8)	106(56.7)	14(7.5)
8급 이하	5(33.3)	8(53.3)	2(13.3)	7(46.7)	7(46.7)	1(6.7)
보건기관 근무경력(년)						
≤10	6(35.3)	8(47.1)	3(17.6)	4(23.5)	12(70.6)	1(5.9)
11-15	91(56.5)	55(34.2)	15(9.3)	59(36.6)	92(57.1)	10(6.2)
15<	17(68.0)	7(28.0)	1(4.0)	11(45.8)	9(37.5)	4(16.7)
현재 구강보건 종사여부						
구강업무 종사	54(48.6)	42(37.8)	15(13.5)	38(34.5)	63(57.3)	9(8.2)
구강업무+타업무 종사	33(68.8)	12(25.0)	3(6.3)	20(41.7)	25(52.1)	3(6.3)
타업무 종사	27(61.4)	16(36.4)	1(2.3)	16(36.4)	25(56.8)	3(6.8)
공무원 근무동기						
평소 뜻한바 있어서	30(57.7)	16(30.8)	6(11.5)	20(39.2)	27(52.9)	4(7.8)
민간기관은 적성에 맞지 않음	12(46.2)	9(34.6)	5(19.2)	9(34.6)	15(57.7)	2(7.7)
공무원은 신분보장이 되므로	66(59.5)	39(35.1)	6(5.4)	38(34.2)	67(60.4)	6(5.4)
기 타	6(42.9)	6(42.9)	2(14.3)	7(50.0)	4(28.6)	3(21.4)
계	114(56.2)	70(34.5)	19(9.4)	74(36.6)	113(55.9)	15(7.4)

연구의 대상이 모두 보건기관 근무 치과위생사인 반면 다른 연구들은 치과병의원 근무 치과위생사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때문으로 생각된다. 즉, 일반적으로 민간 치과의료계가 기혼 치과위생사를 기피하고 있으며(강부월 등, 1994), 결혼 후의 치과위생사의 활동이 저조한데(전주연, 1992; 정순희, 1993) 반해,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민간 치과병의원에 비해 신분이 보장되는 공무원이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되는데, 공무원 근무동기로 '신분보장이 되므로'라는 응답률이 54.7%로 가장 높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경상북도 보건기관 근무 치과위생사 중 구강보건업무에만 종사하는 치과위생사는 54.7%였으며, 21.7%가

14 일개 도지역 보건기관 근무 치과위생사의 직무실태와 개선방안

표 12. 보건기관 근무 치과위생사의 근무처에 따른 일평균 업무시간과 고유업무담당시간

	보건소(보건의료원) (n=88)	보건지소 (n=115)	계 (n=203)
일평균 업무시간(A)	8.26±0.82	8.11±0.57	8.18±0.70
구강보건업무 담당시간(B)	4.23±3.59	5.12±2.85	4.73±3.21
B/A*100(%)	51.2	63.1	57.8

표 13. 보건기관 근무 치과위생사의 근무처에 따른 세부 구강보건업무 투입시간 비율

업 무 명	단위: %		
	보건소(보건의료원)	보 건 지 소	계
치과실내에서의 치과진료 보조업무**	26.9±39.0	52.8±30.0	41.6±36.4
구강보건실내에서 구강보건업무*	14.0±22.0	7.7±14.1	10.4±18.2
학교구강보건사업	12.1±21.7	9.1± 9.2	10.4±15.9
수직적 구강보건사업 (영유아, 임산부, 노인, 장애인, 산업장 등)	4.7± 9.0	4.7± 6.1	4.7± 7.5
행정 또는 민원업무*	20.5±36.4	11.1±12.1	15.1±26.0
기타(타업무 종사)	22.1±38.5	13.7±29.9	17.3±34.0

* p<0.05, ** p<0.01.

표 14. 보건기관 근무 치과위생사의 근무처에 따른 가장 중요한 세부 구강보건업무

업무명 및 순위	단위: %		
	보건소(보건의료원)	보 건 지 소	계
구강보건실내에서 구강보건업무	52.3	61.7	57.6
학교구강보건사업	44.3	29.6	36.0
수직적 구강보건사업	2.3	6.1	4.4
치과실내에서의 치과진료 보조업무	1.1	2.6	2.0

표 15. 보건기관 근무 치과위생사의 근무처에 따른 구강보건업무의 가장 큰 문제점

업무명 및 순위	단위: %		
	보건소(보건의료원)	보 건 지 소	계
공중보건치과의사 부족으로 치과위생사 고유업무에 종사하지 못함	33.0	31.3	32.0
보건기관 구성원의 구강보건사업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여 사업지원이 안됨	25.0	35.7	31.0
예산 및 인력부족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구강보건사업 실시가 어려움	15.9	12.2	13.8
치과위생사 업무영역 및 구강보건사업 범위가 좁아서 자율적 사업추진 어려움	12.5	12.2	12.3
타 업무에 비해 업무량이 과중	8.0	4.3	5.9
각 학교 및 유치원 등의 업무 미협조로 사업추진에 장애가 많음	4.5	4.3	4.4
직장내 동료들간의 업무 미협조로 업무추진 의욕이 없음	1.1	0.0	0.5
기 타	1.1	0.0	0.5

구강보건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에만 종사하고 있었고, 23.6%는 구강보건업무와 타업무를 겸임하고 있어 45.3%의 치과위생사가 고유의 업무인 구강보건업무에만 종사하지 못하고 타 업무를 하고 있거나 겸임하고 있어 전문인력 활용에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최근 공중보건치과과의사가 감소하여 지역보건법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에 의한 '전문인력 등의 면허 또는 자격의 종별에 따른 최고배치기준' 상의 치과과의사 정원의 50% 수준 정도(경상북도, 2001)인 것에 기인하는데, 치과대학의 여성 졸업자 현황을 고려할 때 공중보건치과과의사의 확충이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타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치과위생사와 치과 유희장비에 대한 활용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다.

보건기관 근무 치과위생사들의 52.2%가 자신들의 업무량이 타부서에 비해 많다고 하였는데, 특히 보건소 근무 치과위생사가 보건지소 근무 치과위생사에 비해 타부서에 비해 업무량이 많다고 느끼고 있었다. 남용옥과 나윤숙(2000)의 연구에서도 보건소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가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보다 업무량에 대한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고 있었고, 이는 보건소는 시·군의 중심지역에 위치하기 때문에 내소하는 지역주민들이 많이 처리해야 할 업무량이 많기 때문일 것이라고 하였다. 위생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손성호 등(1999)의 연구에서는 위생담당 공무원의 59.6%가 자신들의 업무량이 타부서에 비해 많다고 하여 본 연구의 결과가 약간 낮았다.

보수에 대해서는 보건기관 근무 치과위생사의 36.5%가 만족한다고 하였고, 61.6%가 보통이라고 응답하여 대체로 긍정적이었는데, 김진범과 황윤숙(1990)의 연구에서는 보건소 치과위생사(구강위생사)들의 직업활동에 대한 가장 큰 불만요인으로 학력에 합당한 경제적 대우를 해주지 않는다고 하여 본 연구와 차이가 있었다. 이는 김진범과 황윤숙(1990)의 연구시기는 공공보건기관에 치과위생사가 정규직이 아닌 임시직으로 배치되어 치과진료보조업무를 수행하던 때이었으나 지금

은 1992년 3월부터 정규직인 의료기술직 또는 보건직으로 임용되어 직장이 안정적이고 10년이 지나 직급과 호봉이 올라간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업무에 대한 긍지와 보람은 치과위생사의 73.9%가 많이 느낀다고 하여 위생담당 공무원들 대상으로 한 손성호 등(1999)의 연구에서의 29.1%보다는 매우 높았고, 보건진료원을 대상으로 한 박영희 등(2000)의 84.2%보다는 약간 낮았다.

보건기관 근무 치과위생사의 32.0%가 전직의사가 많다고 하였는데, 구강업무 외의 업무에 종사할수록 전직의사가 높았다. 위생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이인수 등(1993)의 연구에서는 전직의사가 많다가 79.8%, 손성호 등(1999)의 연구에서는 전직의사가 많다가 59.3%로 본 연구의 결과가 낮았다. 전직의사의 이유로는 '승진기회의 부족'이 41.5%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타업무 종사(21.5%)', '적성에 맞지 않음(18.5%)' 순이었는데, 위생담당 공무원은 승진기회의 부족, 사회의 부정적 시각, 징계를 받을 기회가 많다 등(손성호 등, 1999)과 승진기회의 부족, 가정생활 지장의 순(이인수 등, 1993)으로 승진기회의 부족이 가장 주요한 이유인 것은 일치하나 나머지는 차이가 있었다.

일반적으로 직업적 긍지는 능력발전과 봉사동기에 매우 높은 상관성을 보이고(임문혁, 1984), 직무에 대한 만족 정도가 업무의 질과 종사의욕, 그리고 사명감 등에 영향을 미치므로(양경수, 1977), 보건기관 근무 치과위생사의 업무에 대한 보람과 긍지를 느끼고 전직의사를 줄이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승진의 기회를 부여하고, 고유의 구강보건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다.

보건기관 근무 치과위생사가 지난 3년 동안 보수교육 이외 직무교육에 참여한 적이 있는지 알아본 결과 47.3%가 참여하였다고 응답하여 보건진료원을 대상으로 한 박영희 등(2000)의 27.5% 보다는 높았으나, 변화하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기회가 많아져야 하겠다. 또한 선별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교육을 이수한 치과위생사가 시·군에서 전달교육을 시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등 시·군 보건소는 관련 프로그램을 다양화하여 교육이 업무에 효과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조직적인 노력을 해 주어야 하겠다.

연구사업 및 특수사업에 대해서는 19.2%만이 참여경험이 있다고 하여 보건진료원의 연구사업 참여경험률 27.5%, 특수사업(주민환원사업) 참여경험률 65.4%(박영희 등, 2000) 보다 낮았다. 지역의 구강보건을 위하여 연구사업이 활성화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시·군 단위로 지역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연구사업을 선정하여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대학이나 전문가와 연계하여 체계적이고 다양한 연구사업을 실시하여 이 결과를 토대로 지역주민의 구강보건을 위한 치과위생사의 기능이 보완되고 재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장애인 시설과 한센 정착촌 구강보건사업 등과 같은 특수사업도 지역 실정에 맞게 장려되어야 할 것이다.

공무원 계급에 6급 치과위생사가 없는 이유에 대해 타직렬의 견제때문이라는 응답이 60.6%로 가장 높아 평소 보건기관내의 타직렬과의 갈등의 소지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 보건직이나 간호직 등에 비해 치과위생사는 상대적으로 승진의 기회가 적고 담당(6급)을 맡을 기회가 거의 없어 이에 대해 개선 방안을 고려해 보아야 하겠다.

구강보건업무 외의 타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치과위생사에 대해 53.7%가 반드시 구강보건업무에 종사시켜야 한다고 하였고, 30.5%는 타업무에 종사하는 것도 개인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하였고, 13.8%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야 한다고 하여 44.3%는 타업무에 종사하는 것에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는 개인의 발전과 타업무와의 연계를 위하여 보건기관의 업무 전반을 경험하는 것도 좋은 것으로 여기는 치과위생사들도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공중보건치과의사 미배치지역 치과위생사의 활용방

안에 대한 의견으로 61.9%가 치과진료실을 구강보건실로 전환하여 구강질환 예방사업에 종사하여야 한다고 하였고, 34.2%는 지역실정에 맞는 구강보건사업을 개발하여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고 하였고, 유휴 치과장비의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89.1%가 지역실정에 맞게 치면세마사이에 활용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여, 대다수의 치과위생사는 공중보건치과의사가 미배치될 경우 유휴인력과 장비를 구강보건사업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바라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또한 치과의사가 배치되어 있더라도 강성귀 등(1995)의 연구에서 공중보건치과의사들이 향후 구강보건 활동이 예방과 보건교육, 치료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답했으나 실제로는 1년 이상 구강보건실에 계속 근무하고자 하는 치과의사가 없이 구강보건실 근무를 기피하고자 하는 경향을 볼 때 이에 관한 현실적인 해결책이 없는 한 치과위생사가 구강보건실의 주체 인력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보건기관 근무 치과위생사의 79.7%가 구강보건업무가 타업무에 비해 중요하다고 느끼고 있었고, 56.2%는 현실적으로도 구강보건업무가 중요하게 평가받고 있다고 응답하여 자신이 담당하는 업무가 중요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었는데, 이는 위에서 보건기관 근무 치과위생사의 73.9%가 업무에 대한 긍지와 보람을 느낀다고 응답한 것과 부합되고 있었다.

구강보건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75.9%가 매우 필요, 22.7%가 필요하다고 하여 거의 대부분의 치과위생사가 필요하다고 하였는데, 이는 보건진료원들의 95% 이상이 보건진료소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박영희 등, 2000)과 비슷하였다.

향후 구강보건업무의 확대 가능성에 대해서는 92.6%가 확대될 것이라고 응답하여 보건진료원들의 38.3%가 보건진료소의 역할이 증대될 것이라고 응답한 결과(박영희 등, 2000) 보다 매우 높아, 앞으로 구강보건업무의 활성화에 대한 치과위생사들의 기대가 크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

보건기관 근무 치과위생사의 일평균 업무시간은 8.18 시간이었으며, 이 중 구강보건업무 담당시간은 4.73시간으로 업무시간의 57.8%를 구강보건업무에 투입한다고 하였는데, 보건소 근무 치과위생사가 보건지소 치과위생사에 비해 구강보건업무 담당시간이 적었고 투입 비율도 낮았다. 위생담당 공무원은 업무시간의 83.3%를 위생업무에 투입한다고 한 결과(손성호 등, 1999)와 비교할 때 치과위생사들은 고유의 업무에 투입하는 시간 비율이 낮아 인력의 활용에 있어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는데, 이는 공중보건치과의사가 미배치된 지역의 치과위생사들을 타업무에 종사하도록 하거나 타업무를 겸임하도록 한 것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치과위생사 인력을 지역주민의 구강보건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한데, 치과의사 미배치 지역의 치과위생사에 대하여는 본인이 구강보건 업무에 종사하기를 희망할 경우 치과진료실을 구강보건실로 전환하여 인근 지역의 공중보건치과의사의 지도하에 구강보건사업에 종사하도록 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치과위생사들이 하루 업무 중 세부 구강보건업무에 투입하는 시간 비율은 치과진료실 내에서의 치과진료 보조업무, 구강보건업무 외의 타업무, 행정 또는 민원 업무, 구강보건실 내에서의 구강보건업무, 그리고 학교 구강보건사업 등의 순이었는데, 치과진료실 내에서의 치과진료 보조 업무의 투입시간 비율은 보건지소가 52.8%로 보건소의 26.9%에 비해 높았고, 구강보건실 내에서의 구강보건업무와 행정 또는 민원업무의 투입 시간 비율은 보건소가 보건지소에 비해 높았다. 구강보건업무 중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업무로는 구강보건실 내에서의 구강보건업무, 학교구강보건사업, 영유아·임산부·노인·장애인·산업장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한 구강보건사업의 순으로 실제로 수행하고 있는 업무의 양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업무가 달랐는데, 위생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손성호 등, 1999)에서도 실제로 수행하고 있는 업무의 양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업무가 달라 비슷한 경향이었다. 치과진료실 내에서의 치과진료 보조 업무는 투입시간 비율이 41.6%로 가장 높았으나 2.0%만이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구강보건업무라고 응답한 반면, 구강보건실 내에서의 구강보건업무의 투입시간 비율은 10.4%였으나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업무에는 57.6%로 매우 높았다. 김진범과 황윤숙(1990)도 치과위생사는 의료가사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연의 업무가 '치아 및 구강의 질환 예방업무'인데 보건소 치과위생사가 치과의사의 구강진료 보조에 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하였고, 보건소 치과위생사들이 가장 하고 싶어하는 업무는 공중 구강보건사업이나 구강병 예방진료라고 하여 본 연구와 일치된 결과였고, 양정승(1993), 정순희(1993) 등도 치과위생사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향후 구강보건업무 추진에 있어서의 정책입안 시 이를 고려한 제도적 보완장치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된다. 우리나라의 치과위생사를 위한 교육제도나 임무 및 활동상이 일본의 제도와 유사한데, 우리나라와 일본의 치과위생사의 업무는 구강보건교육과 예방진료, 그리고 치과진료 보조업무의 3가지로 대별되지만 치과위생사 제도가 처음 시작된 미국 등에서는 구강보건교육과 예방진료의 2가지 업무만을 주 업무로 내세우고 있는 것(송운신, 1995)을 참고할 수 있겠다.

치과위생사들이 구강보건업무를 수행하는데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공중보건치과의사의 부족으로 치과위생사 고유 업무에 종사하지 못함(32.0%), 보건기관 구성원의 구강보건사업에 대한 관심부족(31.0%), 예산 및 인력부족(13.8%), 치과위생사의 업무영역 제한(12.3%)의 순으로 지적하였고, 구강보건업무 개선방안으로는 보건복지부 및 시·도에 치과위생사 배치(30.5%), 인력 및 예산확보(24.1%), 구강보건법 강화(23.6%), 치과위생사 업무영역 확대(21.2%)의 순이었다.

따라서 지역주민의 구강건강을 위한 구강보건업무가 되기 위하여서는 치과의사의 확보가 중요한데, 현실적

으로 공중보건치과의사를 확충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치과 의사를 전문직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겠으며, 의료기술직 치과위생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는 시·도에는 구강보건업무를 전담할 치과위생사를 배치하여 업무의 전문성을 증대시키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하겠고, 치과위생사들의 역할을 진료보조에서 구강보건교육과 예방진료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문제점과 개선방안으로 인력부족과 인력확보를 제시하고 있는데, 장선희(1998)의 연구에서도 조사대상 42개 구강보건실의 78.6%인 33개 구강보건실에서 현재의 치과위생사 인력이 부족하여 평균 보건(지)소 당 평균 1.9명 이상이 충원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여 비슷한 결과였다. 본 연구에서 공중보건치과 의사 미배치지역이 늘어남으로 인해 치과위생사의 45.3%가 타업무에만 종사하거나 타업무를 겸임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타업무에 근무하고 있는 치과위생사가 인력이 부족한 구강보건실로 재배치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또한 구강보건사업에 대한 관심의 증대와 예산확보가 필수적인데, 2002년 도는 보건복지부 내에 구강보건과가 설치된 지 4년으로 구강보건과가 설치된 이후 가장 많은 예산을 확보한 것(서신일, 2002)은 매우 고무적인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경상북도만을 조사하여 전국의 상황과 보건기관 근무 치과위생사를 대표하기에는 제한점이 있으나 전국을 대상으로 구강보건실을 조사한 장선희(1998)의 연구에서도 42개 구강보건실 중 18개소에 치과 의사가 배치되지 않고 있었고, 조사대상 치과위생사 386명 중 24.1%인 93명이 구강보건실에 근무하고 있었으며, 구강보건실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 93명 중에서도 14명은 타업무와 겸직하고 있어 본 연구와 상황이 비슷하여 연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의 결과, 보건기관 근무 치과위생사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는데, 우선 타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치과위생사의 재배치를 통해 구강보건업무에 종사하도록 하여야 하겠고, 치과위생사의 업무를 치과 진료실 내에서의 진료보조 업무에서 구강보건교육과 에

방진료 등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겠으며, 공중보건 치과 의사 미배치지역에 대해서는 지역실정에 맞게 치과 진료실을 구강보건실로 전환하여 구강보건사업에 활용하도록 하여야 하겠다. 치과 의사에 대한 수요는 있으나 공중보건치과 의사가 배치되지 못한 지역에서는 치과 의사를 전문직 공무원으로 채용하여 치과위생사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구강보건사업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치과위생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직무교육, 연구사업, 특수사업 등의 참여기회를 확대 부여하도록 하여야 하겠고, 치과위생사에 대한 6급 승진 기회 부여와 시·도에 구강보건 담당부서 설치 및 치과위생사 배치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요 약

보건기관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의 직무실태, 직무만족도, 그리고 향후 직무개선 방안을 알아보기 위하여 경상북도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근무하고 있는 치과위생사 전원(203명) 대상으로 2002년 4월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타부서에 비해 업무량이 많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52.2%였고, 보수 수준에 대하여는 61.6%가 보통, 36.5%는 만족한다고 하였다. 대상자의 73.9%가 업무에 대해 긍지와 보람을 느낀다고 하였고, 32.0%가 전직 의사가 있다고 응답하였는데, 전직 의사 이유로는 승진기회의 부족이 가장 높았다. 대상 치과위생사의 47.3%가 직무교육에 참여한 경험이 있었고, 19.2%가 특수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었다. 치과위생사가 공무원계급에 6급직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는 60.6%가 타직렬의 견제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보건기관에서 타업무에 종사하는 치과위생사에 대해서는 53.7%가 구강업무에 종사하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고, 치과 의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의 치과위생사에 대해서는 61.9%가 치과진료실을 구강보건실로 전환하여 구강질환 예방사업에 종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고 하였다. 보건기관의 유휴 치과장비에 대해서는 89.1%가 지역실정에 맞게 치면세마사이에 활용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보건기관 근무 치과위생사의 구강보건업무 담당시간은 전체 업무시간의 57.8%를 차지하였고, 투입시간 비율은 치과실내에서의 치과진료업무가 41.6%로 가장 많았다. 구강보건업무 중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업무로는 구강보건실 내에서의 구강보건업무, 학교구강보건사업, 수직적 구강보건사업 순이었다. 보건기관에서의 구강보건 업무를 수행하는데 문제점으로는 공중보건치과과의 부족으로 치과위생사 고용 업무에 종사하지 못함, 구강보건사업에 대한 관심부족, 예산 및 인력부족 순이었다. 개선방안으로는 보건복지부와 도에 치과위생사 배치, 인력 및 예산확보 등이었다.

이상의 결과, 보건기관 근무 치과위생사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는데, 타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치과위생사의 재배치를 통해 구강보건업무에 종사하도록 하여야 하겠고, 치과위생사의 업무를 치과진료실 내에서의 진료보조 업무에서 구강보건교육과 예방진료 등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겠으며, 공중보건치과 의사 미배치지역에 대해서는 지역실정에 맞게 치과진료실을 구강보건실로 전환하여 구강보건사업에 활용하도록 하여야 하겠다. 또한 치과위생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직무교육, 연구사업, 특수사업 등의 참여 기회를 확대 부여하도록 하여야 하겠고, 치과위생사에 대한 6급 승진 기회 부여와 시·도에 구강보건 담당부서 설치 및 치과위생사 배치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인 용 문 헌

1. 강부월, 남용옥, 원복민. 치과위생학개론. 서울, 청구문화사, 1994
2. 강성귀, 안상희, 김동기. 보건소 및 보건지소 구강보건실 관리실태에 관한 조사 연구. 구강보건학회지 1995; 19(2): 183-208
3. 경상북도. 보건소 설치운영 현황. 내부자료, 2001
4. 김진범, 황윤숙. 보건소 구강위생사업 실태 및 의식구조에 관한 조사연구. 신구전문대학 논문집 1990; 8: 307-321
5. 남용옥, 나운숙. 보건소 치과위생사의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2000; 17(2): 125-147
6. 박영희, 감신, 한창현, 차병준, 김태웅, 지정애, 김병국. 보건진료소의 업무실태와 개선방안. 한국농촌의학회지 2000; 25(2): 353-377
7. 보건복지부. 2002 구강보건사업안내. 2002
8. 서신일. 구강보건정책의 현황 및 방향. 2002 구강보건사업 발전을 위한 워크숍, 전라북도, 2002. 6. 18, 쪽 5-13
9. 성정희. 치과위생사들의 수행업무 실태조사 -보건소 및 보건지소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10. 손성호, 감신, 박재용, 박기수, 한창현, 차병준. 위생담당 공무원의 직무실태와 위생업무의 보건소 이관에 대한 태도. 보건행정학회지 1999; 9(3): 129-148
11. 송근배, 손희용, 정재관, 도영주, 정성화, 이영은. 경상북도 12세 아동들의 구강보건실태조사-기초자료 실태조사 보고서-. 경북대학교 치과대학 예방치과학교실, 1999, 쪽 1-172
12. 송윤신. 치과위생사의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5
13. 양경수. 한국 임상간호원의 직무만족에 관한 분석 연구. 중앙의학 1977; 2(2): 201-209
14. 양정승. 치과의원 근무 치과위생사의 직무분석에 관한 조사 연구. 광주보건전문대학논문집 1993; 18: 273-290
15. 이인수, 박재용, 차병준. 대구·경북지역 위생계 공무원의 직무실태. 대한보건협회지 1993; 19(2): 100-114

20 일개 도지역 보건기관 근무 치과위생사의 직무실태와 개선방안

16. 임문혁. 종합병원 간호원의 직무만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4
17. 장선희. 보건소 구강보건실 치과위생사의 업무실태. 원광대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18. 전주연. 치과위생사의 임금 수준에 관한 조사 연구. 원광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1
19. 정순희. 치과위생사의 업무실태 및 의식구조에 관한 연구. 치아사랑, 여름: 26-29/가을: 18-23, 1993
20. 최충호, 권호근. 보건소 구강보건실 실태 및 업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한구강보건학회지 1997; 21(2): 301-322